

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12월 28일
-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조례근거 규정 변경
 - “자동차관리법 제61조제3항”을
→ “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”으로
- 과징금 납부통지 규정 폐지
 -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징금 납부통지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
- 기타 일부 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, 조례근거규정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